

서울특별시 마포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

2012. 05. 18
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2년 5월 8일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12년 5월 11일

다. 상정일자 : 제169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(2012. 5. 18)
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지역경제과장 김영남

가. 제안이유

동 조례안은 「담배사업법 시행규칙」 제7조제3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시 실시하고 있는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업무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제출된 것임.

나. 주요내용

(1) 안 제1조 와 안 제2조에서는 소매인지정 신청 시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의뢰하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목적과 적용범위를 규정함.

- (2) 안 제3조에서는 사실조사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.
- (3) 안 제4조에서는 사실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첫째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·인력이 절감되는 경우, 둘째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, 셋째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.
- (4)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때는 협약서에 목적, 업무의 범위, 협약기간, 비용, 처리기한, 책임과 의무, 협약의 해지,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함.
- (5) 안 제6조에서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로서 업무의 지연처리, 개인정보유출 및 목적 외 사용, 부당징수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관련 서류를 보관하도록 규정함.
- (6) 안 제7조에서는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실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·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.
- (7) 안 제8조에서는 구청장은 안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하거나, 업무수행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, 협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협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.

3. 검토보고 (명금길 전문위원)

동 조례안은 담배소매인 지정의 사실조사 업무를 기관 등에 의뢰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인력절감으로 신속한 대민서비스를

제공함은 물론 행정의 능률성을 증대하고자 「담배사업법 시행규칙」 제7조제3항에 따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,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절차상으로도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법제사무처리규칙」 제6조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: 없음